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27 | 2026.4.13 (2026.4.6~2026.4.12)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얼라이언스(Drone Industry Alliance, DIA) 2026년 1차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총회는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자리로 정부 주도의 협업체를 넘어 민간이 운영 주도권을 갖는 체계를 확립하고,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재정경제부>는 공급망 통계·조사체계 신설, 위기 대응 훈련 및 자료관리 기반 마련 위원회·기금 운영과 매점매석 관리절차를 보완하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 등 대상 직접투자는 투자 한도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캐피탈 및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는 등 한국 수출입은행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공시 부담완화를 위해 소액공모의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의 투자에 대해서는 공모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집중투표제가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도 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정기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35인)**」 ,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국한되어 있던 가상자산 법 제도를 발전시키고,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상자산기본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하는 등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의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등을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 ,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시청지도 수단 제공 여부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에 반영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

K-뷰티가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속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총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진흥·기술개발·수출확대·ESG 경영 등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완화하는 한편, 생산한 전기를 전기설비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표시한 구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프라기본법안(송석준의원·손명수의원 등 36인)**」 ,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늘리고,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4.13.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경위>에서는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며, <과방위>, <국방위>, <국토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실시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국민주권정보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기후에너지환경부) 7
- 「드론산업얼라이언스 1차 총회」 개최(국토교통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0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0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1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11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12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12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부) 1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집단소송법안(이강일의원 등 13인) 1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의원 등 12인) 15
- 집단소송법안(박상혁의원 등 11인) 16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의원 등 20인) 16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3인) 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35인) 17
- 가상자산기본법안(김성원의의원 등 10인) 18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의원 등 10인) 18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의원 등 10인) 1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의원 등 11인) 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의원 등 10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22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5인)	2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3인)	2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23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24
•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24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5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5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2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26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4인)	2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	26
• 국가인프라기본법안(송석준의원·손명수의원 등 36인)	27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	27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2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2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2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에너지·자원] 2026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 [방송통신(TMT)] 국가 인공지능 혁신의 마중물, 국가 인공지능 사업 52개 과제 선정
- [소송] 재판소원 제도 도입 2. 해외 입법례와 실무상 시사점
-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4월호
-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법무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업조직개편 및 공시 규제 동향 및 유의 사항
- [바이오/헬스케어] 건강보험 약가제도 전면 개편안 분석: 리스크와 대응 전략
- [글로벌리스크대응] 통상산업정책 뉴스레터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주권정보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체계로 전환, 모든 영역의 전기화·탄소화 추진 - 국민 1천만명이 참여하는 에너지소득 실현, 녹색 제조 세계 3강 도약	2026-04-06
----------	---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힘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입 다변화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 확산, 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도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1. 재생에너지 2030년 20% 이상 달성

- ①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여,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태양광 보급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
- ②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이행안(로드맵)을 마련.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대체 산업 육성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21기는 안보 전원으로의 활용 등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폐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
- ③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를 재생열로 전환.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열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기열 및 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활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으로 전환

2. 녹색 제조 세계 3강 도약

- ④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녹색산업을 본격 육성. 이를 위해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핵심기술 기술개발, 실증과 세제 지원을 추진. 또한, 한전 기술지주를 설립하고, 에너지벤처 창업, 유니콘 성장의 거점으로 ‘지역 에너지 특별시’를 조성
- ⑤ 산업 공정의 전기화 및 연·원료의 청정화도 추진한다. 3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28년 완공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2037년 이후 상용화하여 그린 철강 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로 전환 및 공정 효율화를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

- ⑥ 모든 움직이는 동력원의 전기화를 추진.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특히 경찰차, 액화석유가스(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도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
- ⑦ 에너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과 재정 지원도 강화. 융자, 이자 지원, 보증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탈탄소 투자,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강화

3. 에너지전환 지역균형발전

- ⑧ 국가 전력망을 분산형, 양방향 전력망으로 전면 혁신.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내 전력 생산, 저장, 소비가 최적화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 불가피한 지역간 전력 수급 불균형은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등 융통선로 구축, 유연접속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
- ⑨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걸맞은 전기요금, 전력시장제도로 전면 개편. 송전 비용과 자립도,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
- ⑩ 국민 1,000만 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을 실현·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조성하여 전국으로 확산하고,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이 투자하게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지원

국토교통부

「드론산업얼라이언스 1차 총회」 개최

- 민간 중심 협의체 본건 가동, 민간 의장사 선출로 산업 생태계 활성화
- 기업·정부 함께 규제 개선·기술개발 추진... 드론 활용 서비스 확대 기대

2026-04-09

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얼라이언스(Drone Industry Alliance, DIA)* 2026년 1차 총회」를 개최하였음

* 산업부·국방부 등 10개 정부 부처, 니어스랩·LG에너지솔루션·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188개 드론·항공 분야 기업, 17개 대학, 12개 학회/협회/비영리법인, 27개 지방정부, 24개 공공기관 등 374개 기관으로 구성('26.3월 기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25년 5월 출범하여 그 동안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 왔음. 이제 그 기반을 토대로 여러 분야에 흩어진 역량을 모아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고자 함

이번 총회는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자리로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넘어 민간이 운영 주도권을 갖는 체계를 확립하고, 일방적 의견 수렴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힘

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거친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초대 의장사를 선출하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① 상용화 촉진 ② 규제 개선 ③ 기반 조성 ④ 핵심기술 자립 ⑤ 국제 협력 등 5개 분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운영

5개 분과에서는 해외 규제 대응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책, 드론의 비가시권 운용 기반 마련, 드론 교통관리체계 조성, 업계 맞춤형 조종 자격 고도화, 고출력 모터 및 ESC 개발, 글로벌 표준 등에 대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을 도출할 예정

또한, 분과 활동을 분과위원회 중심에서 회원사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활동 내역을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공개. 분과별로 정부의 긴급 현안을 다루는 집중 대응 전담 조직인 '프로젝트 유닛(PU)'도 신설하여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

드론산업얼라이언스 회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도출한 제언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가 제언 내용을 적극 검토·수렴하여 관계 기관에 공유·전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또한, 향후 정부의 드론 관련 정책 수립과 표준 마련 등에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임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총회에서 산업통상부·국방부·방위사업청·국무조정실과 함께 드론 산업 정부 정책 방향을 밝히는 시간을 마련했음. 이를 통해 드론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효과가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2026-10-08 시행 예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규정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07-08 시행 예정
----------	--	------------------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물 관련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공법 또는 제품의 수출 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 지원 사업 항목에 추가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26-10-08 시행 예정
----------	-----------------------	------------------

현행법은 화학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화학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바,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게시를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폐기·철거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10-08 시행 예정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2026-10-08 시행 예정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7-04-08 시행 예정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개발사업 추진,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재정경제부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4.08. ~2026.05.18.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안보품목 관련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공급망 관련 통계 조사, 체계를 신설하고 위기 대응 및 자료관리 기반을 정비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및 운영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

공급망 통계·조사체계 신설, 위기 대응 훈련 및 자료관리 기반 마련 위원회·기금 운영과 매점매석 관리절차를 보완하여 공급망 안정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문의처 : [재정경제부 공급망정책담당관실](#) (전화: 044-215-7877, 팩스: 044-215-8166)

재정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4.10. ~2026.05.20.
-------	---------------------	-----------------------------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대출·보증을 연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되,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통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재무 건전성 유지장치를 마련하고(영 16조의5 신설), 벤처기업 등 대상 직접투자는 투자 한도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며(영 17조의7 개정),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캐피탈 및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의 한도를 삭제함(영 16조의4 개정) 한국 수출입은행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총괄과](#) (전화: 044-215-7612, 팩스: 044-215-8147)

산업통상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4.10. ~2026.05.20.
-------	--------------------------	-----------------------------

현행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되어 시행 예정('26. 7. 1.)인 바, 산업인공지능 활용 범위 등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 ① 시행령 제명을「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 ② 산업인공지능의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그 활용 범위를 명시함 (안 제2조의2)
- ③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과 활용 수준에 대한 진단 기준·방법을 구체화함 (안 제4조제2항)

※ 문의처 :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mailto:산업통상부_산업인공지능정책과) (전화: 044-203-3835)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04.08.
~2026.05.18.

화학물질의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수급 위기에 처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례를 신설·적용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인 제품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자료관리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 적용을 요청한 화학물질의 경우 한시적으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제출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4 제3호 개정)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mailto:기후에너지환경부_화학물질정책과) (전화: 044-201-6787, 팩스: 044-201-6786)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4.07.
~2026.05.18.

중소·벤처기업의 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공시 부담완화를 위해 소액공모의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의 투자에 대해서는 공모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조각투자증권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소액공모 미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새로운 투자상품이자 비정형적 성격을 가진 조각투자증권 관련 공시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①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령안 제120조제1항제1호·제2호)
 -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

② 조각투자 증권을 소액공모 미적용 대상의 하나로 포함 (시행령안 제120조제1항제3호)

- 조각투자 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투자계약증권 등과 마찬가지로 소액공모 미적용 대상에 추가

③ 투자권유준칙 대상 금융투자상품 정의 명확화 (시행령안 제55조의2)

- 투자자 등급별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인 파생상품등의 정의를 과거 삭제 전과 동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정성 원칙 대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전화: 02-2100-2644, 팩스: 02-2100-264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집단소송법안(이강일의원 등 13인)집단소송법안(이강일의원 등 13인)

2026-04-06 발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자동차 제작사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그리고 라돈침대 사건 등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임.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극심하며, 피해자의 수는 수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는 소송 비용에 비해 소액인 경우가 많다는 점임

현재 우리 법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해 증권 분야에 한정하여 집단적 피해에 관한 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나, 증권 분야의 피해자와 개인정보 등 타 분야의 피해자를 법적으로 차별하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 증권 외의 영역에서도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집단적 소송 제도가 부재하여 사법 접근성이 저해되고 기업의 반사회적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작동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통해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특히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법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2026-04-08 발의

현행법 제383조제2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사 일반의 임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의 시행(2026년 9월 10일)을 앞두고 주주총회에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거나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의 임기를 서로 다르게 정하여 임기만료 시점을 분산시키는 ‘시차 임기제’를 도입함으로써 한번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그것임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2026년 7월 2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에 따른 독립이사 포함)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설정하면 매년 주주총회에서 재신임을 받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이사 선임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집중투표제를 회피하는 것이 곤란해지기 때문임. 다만, 이 경우에도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의 경우에는 현행 상법과 동일하게 임기를 3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영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이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집중투표제가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542조의15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집단소송법안(박상혁의원 등 11인)

2026-04-09 발의

최근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장회사,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가 기업 경영을 견제하고 그 소수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질적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매우 어려우므로,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행사요건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주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주주권 행사에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밀히 차등화하고, 주주권 행사에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542조의6 및 제635조)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20인)

2026-04-06 발의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을 결제하고 잔여대금을 이월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에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마다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체결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약정에 따라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기간에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실질적인 비용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이용 질서를 구축하고자 함 (안 제16조의6 신설 등)

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2026-04-07 발의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 (제9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6조제3항)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7인)

2026-04-07 발의

금융위원회는 법 제173조의2제2항(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영향을 미치는 정보누설),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제176조(시세조정), 제178조(부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 제2항에서 위 위반행위로 인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한 뒤에야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적 제재도 한없이 장기화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행정벌과 형사처벌은 법적 성격과 제재 목적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제재수단이고 그 적절한 제재 시기와 불복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벌을 형사처벌의 후속 작업으로만 행사하는 것은 행정적 제재수단을 위법·부당하게 운용하는 것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엄벌에 처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적시에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제재하지 못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형사처벌의 후속작업으로 운용한다면 위와 같은 자본시장 질서의 신뢰회복 정책을 실현하기 어렵게 됨. 이에 금융위원회가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나 형사처벌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도 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407조제6항 및 제430조제3항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35인)

2026-04-08 발의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전통적인 재무정보 중심의 공시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저하, 그린워싱(green washing) 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기후변화, 에너지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 리스크, 산업안전 등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는 이미 기업의 장기적 가치평가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자본시장법 또는 증권법 체계 내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정기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① 사업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신설 (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 신설)
- ②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근거 마련 (안 제159조의2 신설)
- ③ 반기·분기보고서 적용 조정 (안 제160조 개정)
- ④ 경과조치 및 시행시기 (부칙)

정무위원회

가상자산기본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04-09 발의

현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시행되어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어 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최소한의 이용자 자산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도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업자 체계에 대한 규율은 미비한 상황임. 예컨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취급, 외국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이용,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가상자산전담중개업에 대한 규율 등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법을 신설하여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국한되어 있던 가상자산 법 제도를 발전시키고,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04-09 발의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계좌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 개시가 가능함.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주로 은행) 사이의 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 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장벽이 존재함. 이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가능 여부가 규제당국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특히,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거래소 1은행 규제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방지 및 고객확인의 의무를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에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림자 규제로 정착되었고, 그 결과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의 혁신 유인 저하,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의 은행에의 종속,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위험의 단일은행 집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명문으로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가상자산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가상자산기본법안의 마련에 따라 **신고 관련 사항은 모두 가상자산기본법으로 이관**하되, **자금세탁방지**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실명확인 관련 사항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남겨두고자 함** (안 제3조, 제7조, 제17조 개정)

정무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6-04-09 발의

가상자산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사업주체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4년 7월)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가 확립되어 가상자산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혁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2025년 9월)되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가상자산 기업이 다른 혁신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은 물론 블록체인·스마트 컨트랙트·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핵심 딥테크 분야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는 현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한 같은 법상 “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규제 적용 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산업이 신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및 별표 개정)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

2026-04-09 발의

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직접적 행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의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두터이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32조 제4항제4호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2026-04-10 발의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이를 통해 비상장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단기간 내에 증권시장에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가하락 등으로 인하여 모회사 주주의 주주가치가 침해받는다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주주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으나, 이로 인해 기업이 주력사업 변화를 통해 사업의 중심을 미래 기술로 전환하거나, 사양 업종을 매각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물적분할이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주식 배정을 의무화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은 물적분할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주가치를 지키면서 기업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165조의5 및 제165조의6 등)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2026-04-08 발의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등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구조적 특성상 세금계산서 수취가 곤란한 거래에 대해 세금 누적을 완화하고 시장을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은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고품 유통 사업자는 매입단계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국내 리커머스 기업들이 중고 전자제품, 중고폰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지원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임

이에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108조)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2026-04-10 발의

현재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국 내 생산역량의 경제 안보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생산 연계형 지원책을 적극 도입 중에 있음. 우리 경제는 제조업 성장 둔화와 산업 공동화 우려에 직면해 있음.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국한되어 실질적 생산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2026-04-10 발의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지정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연구개발, 실증, 특구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전 주기 지원기반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제조 공급망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간의 선제적 설비투자과 연구·인력개발 확대를 유인할 세제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은 국제 수준의 품질·인증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기술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수주 시점의 불확실성과 장주기 산업 구조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공급망에서 초기 투자가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를 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핵심 제조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되지 않는 한 기업의 투자여력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시설투자 및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율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제조 공급망의 선제적 설비투자과 고용을 촉진하고 공급망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10조제1항제2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2인)

2026-04-06 발의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범죄 교사·방조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 및 영상 제작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고 그러한 행위를 미화하거나 모방을 부추기는 내용의 영상을 유통하여 유사한 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장소의 평온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5인)

2026-04-07 발의

최근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 속에서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재평가되고 있음.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기술 경쟁과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러나 현행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이용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어,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 기반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그리고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2항 제5호 및 제6호, 제15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3인)

2026-04-10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및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정보는 불법촬영물등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법에 명시하여 그 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내대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조치의무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정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며, 국내대리인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8)

문화체육관광
위원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2026-04-08 발의

현행법령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친권자 등이 설정한 등급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가입자가 상시 또는 요청 시 최근 3개월간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청 지도 수단 중 어느 하나의 수단만을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 OTT 플랫폼별로 키즈프로필이나 프로필 잠금, 시청 내역 모니터링 등 청소년 보호 장치 도입 수준이 상이한 실정임. 특히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만으로는 보호자의 사전적 통제가 곤란하여 그 활용성과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고, 이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 영상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시청지도 수단 제공 여부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의8제4항 및 제53조제2항)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2026-04-08 발의

2015년 12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담금을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각종 부담금의 근거법률에 신용·체크카드 납부를 규정하는 근거가 신설되어 국민 편의가 증진되고 부담금 징수 실적 또한 제고되었음.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아직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부담금 납부 의무자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음

한편,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롭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영세·중소 수입 및 판매업자들의 경우 현금 납부에 대한 어려움과 이에 따른 체납 발생 등 초기 제도 편입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안정적 수납 징수체계 정비가 필요함

이에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신규 납부 의무자들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부 순응도를 높임으로써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제도의 정착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의4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2026-04-08 발의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K-뷰티 열풍을 바탕으로 프랑스, 미국에 이어 세계 3위권 수출국으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산업 육성·수출 확대·디지털 전환·지속가능성 대응 등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국내 화장품산업은 중소기업과 인디 브랜드가 전체 수출의 약 70% 이상을 담당하는 구조로, 산업 다양성과 창의성의 원천이 되고 있음. 그러나 개별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인증, 마케팅, 유통 부담이 커서 산업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 한편, 중국 등 경쟁국가의 기술·브랜드 추격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화장품산업이 현재의 글로벌 위상을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함

이에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진흥·기술개발·수출확대·ESG 경영 등 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K-뷰티가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속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026-04-06 발의

최근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목적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부족과 현행법상 전기설비 이용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민간 영리사업자와 동일한 대기열에서 전력계통의 접속을 장기간 대기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완화하는 한편, 생산한 전기를 전기설비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공익성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7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026-04-06 발의

최근 분산에너지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성격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주민과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배전망의 부족과 현행법상 배전망 접속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는 배전망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전사업자는 이들의 원활한 배전망 접속 운영을 위한 사항을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 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익의 지역 환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2026-04-06 발의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대규모의 청정전력 수요와 설비 전환 비용이 수반되며, 특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철강산업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이 과중하여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 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2026-04-08 발의

현행법은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채용시장에서 임금이 “회사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를 후 결정” 등으로 표시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구직자는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 정보인 임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채용 이후 근로조건에 대한 기대 불일치가 발생하여 조기 이직, 재취업 준비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표시한 구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와 구인자 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2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4인)

2026-04-09 발의

현행법은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설비위험, 폭발·발화·인화 위험, 유해인자 노출 등에 대해 일반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사업장 내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학류 등 고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는 물질·제품·기구 별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의 법률에 따라 분산화·파편화되어 있음

이에 사업장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조치, 시설점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2026-04-06 발의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및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대용량 수소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 부지매수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관노선 우회시 공사비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함.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현행법상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

이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수소배관업자가 수소·수소화합물 배관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소를 활용하여 주택의 전기·난방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가하여 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별표 제1호(20)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국가인프라기본법안(송석준의원·손명수의원 등 36인)

2026-04-06 발의

최근 기후 위기 심화로 인한 재난의 상시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에 처해있고,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인프라는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호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독립적인 인프라 거버넌스 기구를 설치하여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시설물별·부처별 칸막이식 체계에 머물러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와 인프라 격차만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

2026-04-07 발의

현재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을 개방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건설이 수주는 받지만 시공을 하지 않고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넘김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영역의 수주를 받는 것보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체 영역의 수주를 받는 비율, 규모가 훨씬 큰 상황으로, 이러한 수주격차를 방지할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도산 우려가 제기됨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늘리도록 함. 또한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1항 등)

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2026-04-09 발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분쟁과 다툼은 물론 폭행과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단순히 공동주택 입주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음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주체를 통한 소음차단 조치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층간소음 상담, 층간소음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고, 「주택법」에는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의 규정들은 대부분 조치사항으로 권고 등 소극적인 사항에 머물러 있어 층간소음 문제의 예방이나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 모든 세대에 대하여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가 바닥충격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를 입주예정자 및 모든 국민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층간소음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2026-04-09 발의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속도도 높아지며 승강기소음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승강기소음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35조제1항제2호)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4/13(월) 14:00	-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재경위	전체회의	4/15(수) 10:00	-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신현송) 인사청문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	4/14(화) 10:00	- 법안 심사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	4/14(화) 14:00	- 국가연구데이터법 관련 입법공청회, 법안 심사
	전체회의	4/14(화) 16:00	- 방미심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법안 의결
국방위	전체회의	4/14(화) 14:00	- 법안 의결
국토위	전체회의	4/13(월) 10:00	- 건설안전특별법안 관련 공청회
	국토법안소위	4/14(화) 10:00	- 법안 심사
	교통법안소위	4/15(수) 10:00	- 법안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4/13(월) 11:50	AI·SW 정책 및 산업 현안 브라운백 4차 포럼	최형두·이주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4/13(월) 14:00	AI 파고를 기회로, SW산업의 새로운 미래와 가능성	이해민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4/14(화) 10:30	미-이란 충돌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한·미 전략적 대응	이준석·김건 의원실 등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4/14(화) 14:00	AI 바이오헬스산업 지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역할과 과제	김성원·송기헌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4/15(수) 14:00	취약계층노동자·미등록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박홍배 의원실 등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4/16(목) 10:00	이재명 정부 노동구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남근·박홍배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4/16(목) 10:30	PBR 1배 미만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 공시 의무화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김현정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4/16(목) 15:00	수소연료전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GX & AX 추진과 수출산업화	정태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4/17(금) 14:00	Water-Energy-AI Nexus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 회물포럼 제34차 토론회	한정애·이학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4/17(금) 18:00	피지컬AI와 로보틱스, 로보틱스랩의 도전	김용태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4/13(월)	「Data+」 제2026-5호(통권 제29호) 발간	국회도서관	
	4/14(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6호(통권 제294호) 발간		
	4/15(수)	「금주의 서평」 제2026-14호(통권 제773호) 발간		
	4/15(수)	「Data&Law」 제2026-3호(통권 제41호) 발간		
	4/16(목)	「금주의 보고서」 제2026-13호(통권 제45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2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4/8(수)	「금주의 서평」 제2026-13호(통권 제772호)	국회도서관	
	4/9(목)	「금주의 보고서」 제2026-12호(통권 제44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4/7(화)	에너지·자원	2026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4/7(화)	방송통신(TMT)	국가 인공지능 혁신의 마중물, 국가 인공지능 사업 52개 과제 선정
4/7(화)	소송	재판소원 제도 도입 2. 해외 입법례와 실무상 시사점
4/7(화)	건설/부동산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Monthly Insight 4월호
4/8(수)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법무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업조직개편 및 공시 규제 동향 및 유의 사항
4/9(목)	바이오/헬스케어	건강보험 약가제도 전면 개편안 분석: 리스크와 대응 전략
4/9(목)	글로벌리스크대응	통상산업정책 뉴스레터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